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제정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 947호
개정 2008년 7월 24일 조례 제 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9년 3월 9일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남·여를 말한다.
2. “모범청소년”이란 학업·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봉사 활동 등에 출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수상대상) 칭찬받을 청소년의 수상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
2. 사회에서 이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그 밖에 선행을 베푼 청소년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 제3조의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 후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경찰서장, 소방서장, 동장, 학교장 등)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2. 청소년 지도위원

3.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일반주민

제5조(시상) 칭찬받을 청소년은 연 10명 이내로 시상한다.

제6조(칭찬받을 청소년의 수혜) 시장은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캠프·문화 등 체험행사

2.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용

3.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6개월 무료 이용

제7조(청소년칭찬위원회) 시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청소년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아동청소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 7. 24, 2009. 3. 9, 2011. 12. 14, 2013. 3. 20, 2018. 12. 26>

1. 시의원

2. 교육관련 전문가 또는 각급학교 운영위원

3.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지도위원

4. 관계 공무원 및 청소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청소년 칭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청소년 칭찬 수상대상자 적격 여부
2.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정책사항
3.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 사업 등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과 정황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학교의 장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사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4 조례 제97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가족여성과장”으로 한다.

⑯ 부터 ㉑ 까지 생략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㉕ 부터 ㉙ 까지 생략

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여성과장”으로 한다.

⑭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⑰ 부터 ⑳ 까지 생략